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5
----------	------

제출년월일 : 2019. 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법률에 의한 구체적 지원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보훈예우수당'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개별법령에 의한 지원 대상 규정(안 제3조)
- 나. 구청장의 책무와 아울러 마포구민의 책무 추가 신설(안 제4조)
- 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위문금, 보훈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 라.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확대(안 제7조)
- 마. 보훈예우수당 지급근거 마련(안 제8조)
- 바. 위문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8. 12. 13. ~ 2019. 1. 2. (의견제출 없음)
- 2)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 원안 동의
- 3)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 원안 동의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9. 1.15.)
-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
- 6) 비용추계서 1부
- 7)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훈선양사업)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
4. 보훈관련 기념일·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
5.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구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회관 등 시설의 운영
2.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
3. 호국·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7.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8. 보훈단체 운영

9.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망위로금 지급·신청)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③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9조(위문금 지급·신청) ① 구청장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8조에 따른 수당 수급자는 위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문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의 장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예산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은 보훈단체의 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p> <p style="padding-left: 2em;">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p> <p style="padding-left: 2em;">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p> <p style="padding-left: 2em;">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p> <p>등 공무수행</p> <p>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p> <p>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p> <p>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p> <p>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p> <p style="padding-left: 2em;">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p> <p style="padding-left: 2em;">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p> <p style="padding-left: 2em;">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p> <p>등 공무수행</p> <p>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p> <p>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p> <p>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p> <p>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p>

훈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7.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제4조(책무) ① 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훈선양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훈선양사업)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

4. 보훈관련 기념일·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

5.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국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회관 등 시설의 운영

2.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

3. 호국·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

4. 보훈관련 기념일·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

5.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6. 국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회관 등 시설의 운영

2.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

3. 호국·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6.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7.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8. 보훈단체 운영

9.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6조의2(사망위로금 지급·신청)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③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로금 신청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자의 유족이 별지 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

제7조(사망위로금 지급·신청)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③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예산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의 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9조(위문금 지급·신청) ① 구청장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8조에 따른 수당 수급자는 위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문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의 장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예산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은 보훈단체의 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신설에 따른 예산 증가

2. 비용추계의 전제

- 2018년 9월 현재 국가보훈대상자 4,044명 중 서울시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서울시조례근거)함에 따라 약 2,500명이 수당지 대상으로 추정되며 고령으로 인한 연간 40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월 2만원 12개월 지원을 원칙으로 비용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2만원기준)

(금액:천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합계	비고
예상인원	2,500	2,460	2,420	2,380	2,340	12,100	구비 100%
1인지급액	240	240	240	240	240	1,200	
금액(천원)	600,000	590,400	580,800	571,200	561,600	2,904,000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이서백
연락처	02-3153-8808